

#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n Concept and Role of Criminal Compliance Officer

김 재 윤\*  
Kim, Jae-Yoon

###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주요 역할 |
| II. 형법적 컴플라이언스<br>(Criminal Compliance)의 개념 | IV. 맺는 말              |

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란 “모든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접하는 법규범, 회사규범, 기업윤리 등 제반 규범상 명시된 요구나 금지를 준수하도록 사전에 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의 개념은 형법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형법적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는 기업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 특별형법 및 부수형법을 포함하는 광의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범적 내용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로부터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는 일반적 컴플라이언스의 특수한 부분으로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에 의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적인 기능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의 방지에 있다. 즉 기업은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임직원이 형법상 범죄행위나 행정법상의 위반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형법적 컴플라이언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기업에게 피해를 끼친다. 뿐만 아니라 거래처, 고객, 일반 투자자, 나아가 전체 국민 경제 등 여러 이해 관계자

투고일 : 2017. 8. 21. / 심사완료일 : 2017. 9. 14. / 게재확정일 : 2017. 10. 11.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Professor, Law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에게 다양한 유·무형의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로인해 한편으로 손해배상 또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기업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고,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서의 기업 지위의 하락, 고객의 상실 등의 형태로 기업의 사회적 평판과 관련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범죄행위의 방지라는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형법적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시스템의 견고한 구축이 요구된다. 이 때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무엇보다 기업 내부에서 임직원에 의한 기업에 대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업 외부에서 제3자에 의한 기업의 법익침해의 위협을 방지하며, 복합기업의 경우 외국 자회사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부담하는 이러한 범죄행위의 방지의무로부터 이들에게 언제나 자동적으로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의 선임계약 체결 시에 구체적인 보증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에 제3자(예컨대 고객)의 법익보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제3자의 법익(또는 공공의 일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내부나 외부로부터 범죄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형법적 준법지원인, 최고준법지원인, 기업범죄, 기업실사

##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나라에서 ‘준법감시’, ‘준법지원’, ‘준법통제’, ‘법(규)준수’ 또는 ‘자율준수’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 ‘준법지원(Compliance)’<sup>1)</sup>이란 용어가 최근 전 세계를 휩쓸며 유행하고 있다.<sup>2)</sup>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1년 개정상법(법률 제10600호)은 기업의 윤리·준법경영과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legal risk)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의

1) 이처럼 컴플라이언스는 우리나라에서 문맥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법규범과 회사규범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기업윤리 등 기업 활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사회규범까지 준수하도록 요구되어지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다층적 의미를 살리고자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특히 강조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고는 통상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라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2) 구글 인터넷 검색창에서 Compliance 단어로 약 419,000,000개의 검색결과를 찾아 낼 수 있다(검색일 : 2017.8.21.).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sup>3)</sup> 형법적 관점에서 볼 때 준법지원인은 기업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데, 이러한 준법지원인을 ‘형법적 준법지원인(Criminal Compliance Officer)’으로 명명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개념이 탄생한 배경에는 준법지원인이 형법적 관점에서 사기, 횡령, 배임 등 기업 내부에서 임직원이 범하는 뇌물공여를 포함한 부패범죄나 자금세탁, 분식회계, 조세포탈 등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회활동, 특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오늘날 형법규범은 규범의 홍수라고 언급될 정도로 양적으로 방대하고 질적으로도 추상적 위법범의 광범위한 도입을 통해 가벌성의 인정시점이 미수범보다 앞당겨진 이른바 ‘전단계범죄화(Vorfelddkriminalisierung)’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5)</sup> 이 때문에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은 준법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항상 법률 리스크에 놓여있게 된다.<sup>6)</sup> 이러한 형법규범의 홍수 속에서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에게 다가오는 형사책임에 대한 위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준법경영 활동은 단지 준법경영 내지 윤리경영 현장의 선포를 통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완비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에서 준법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업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은

3) 개정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박선중, “개정상법상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한국법학원, 2011.6, 233쪽 이하; 박한성,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방안”, 외법논집 제38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11, 131쪽 이하; 윤성승,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의 문제점”,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12, 155쪽 이하; 주기중,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와 해결”, 법학연구 제48권, 한국법학회, 2012, 405쪽 이하; 정찬형,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방향 -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5호, 법무부, 2011.7, 30쪽 이하 참조.

4) 이 개념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Dennis Bock, “Strafrechtliche Aspekte der Compliance-Diskussion - §130 OWiG als zentrale Norm der Criminal Compliance”, ZIS 2/2009, S. 68-81; Christoph E. Hauschka(Hrsg.), *Corporate Compliance*, 2. Aufl., C.H. Beck Verlag, 2010; Hans Theile, “Unternehmensrichtlinie - Ein Beitrag zur Prävention von Wirtschaftskriminalität?”, ZIS 9/2008, S. 406-418 참조.

5)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김재윤,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40-43쪽 참조.

6)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67쪽.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정상법상 새롭게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가 횡령·배임 등 기업의 임직원이 범하는 부패범죄나 자금세탁 등의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준법지원인제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의 전제로서 일반적 컴플라이언스의 특수한 부분으로서 이해되는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와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기업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 어떠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형법적 컴플라이언스(Criminal Compliance)의 개념

### 1. 컴플라이언스 개념과 형법적 컴플라이언스 개념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는 상위 개념으로서 ‘컴플라이언스’ 개념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컴플라이언스 개념과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개념 정의가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적인 개념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라는 개념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모든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접하는 법규범, 회사규범, 기업윤리 등 제반 규범상 명시된 요구나 금지를 준수하도록 사전에 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제도”라고 개념 정의할 경우 형법적 컴플라이언스 역시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규정의 준수에 관한 것임을 손쉽게 알 수 있다.<sup>7)</sup>

그러나 이와 달리 조직 시스템이란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위반과 그에 따른 결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안전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기업 내에서 전략적으로 의도되고 시행된 법률준수의 제반 활동”을 컴플라이언스로 이해한다.<sup>8)</sup> 반면에 다수견해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는 기업경영에 있어 적절한 조직적 조치를 통해 어떠한 법령위반 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의 기울

7) Hauschka, 앞의 책, § 1 Rn. 2.

8) Michael Streck/Burkhard Binnewies, “Tax Compliance”, *DSiR* 2009, S. 229; Malte Passarge, “Risiken und Chancen mangelhafter Compliance in der Unternehmensinsolvenz”, *NZI* 2009, S. 86.

어야 하는 핵심적 의무사항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개념은 내부통제와 감시를 통해 또는 이미 저질러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처벌을 통해 법령위반에 대한 예방적 사전조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룬다.<sup>9)</sup>

이러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형법적 컴플라이언스”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때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는 “일반적 컴플라이언스의 특수한 부분, 즉 기업의 최종의사결정자인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나 그 밖의 임직원에 의한 범죄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일체의 조치 또는 감독의무”<sup>10)</sup>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에서는 기업 내부에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기업적 예방조치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는 예방개념(Präventivkonzept)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기업에서 활동하는 모든 임직원의 형사처벌의 위험(Strafbarkeitsrisiken)에 주목한다. 이는 예방, 탐지(내지 적발) 및 대응이라는 세 가지 기본 기능을 갖는 일반적 컴플라이언스 개념과 달리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경우 기업 내부에서 범죄행위의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기업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는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출현은 전체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반작용의 도구로서의 전통적 형법에서 벗어나 범죄행위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종수단(Steuerungsmittel)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sup>11)</sup> 나아가 이러한 기업경영에 있어 범죄행위의 방지라는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목표설정은 전 임직원을 포함한 기업 전체가 부진정부작위범의 가벌성의 근거가 되는 형법적 보증의무(strafrechtliche Einstandspflicht)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sup>12)</sup>

## 2.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와 (경제)형법

형법적 컴플라이언스 개념과 관련한 논의 가운데 주목할 견해로 독일 기센(Gießen) 대학교 형법 교수인 Thomas Rotsch는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를 경제형법의 고유한 문제와 구별하는 또 다른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sup>13)</sup> 즉 Rotsch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예컨대

9) Dennis Bock, *Criminal Compliance*, 1. Aufl., Nomos Verlag, 2011, S. 21.

10) Dennis Bock, “Strafrechtlich gebotene Unternehmensaufsicht (Criminal Compliance) als Absenkung des Schadenserwartungswerts aus unternehmensbezogenen Straftaten”, *HRRS* 2010, S. 316.

11) Thomas Rotsch, “Criminal Compliance”, *ZIS* 2010, S. 614, 617.

12) Rotsch, 위의 논문, S. 615.

13) Rotsch, 위의 논문, S. 615.

형법적 컴플라이언스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준법지원인의 보증의무에 대한 문제를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에서만 다루는 특별한 문제로 설정하지 않고 경제형법상의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의무의 문제로 다룬다. 이와 유사하게 고위경영진의 형사책임에 대한 문제도 정범 및 공범(Täterschaft und Teilnahme)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형법 제25조 이하의 문제로 다룬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준법지원인의 보증의무, 고위경영진의 형사책임 등의 문제는 어떠한 새롭고, 독자적이고, 고유한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라는 독특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그는 형법적 컴플라이언스 그 자체의 독특한 문제들을 기업경영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만으로 예견할 수 없는 범죄행위의 방지에 대한 필요성에서 찾고 있다.<sup>14)</sup> 또한 그는 이러한 범죄행위의 방지 이외에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또 다른 독특한 문제의 하나로, 기업 차원에서 업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주의의무 기준에 대해 공식적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업은 무엇보다 규범준수가 요구되는 사업영역에서 주의의무 기준과 관련된 자체 모범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특히 과실 영역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될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sup>15)</sup>

이처럼 형법적 컴플라이언스 그 자체의 문제(즉 범죄행위의 방지 필요성, 주의의무 기준과 관련된 자체 모범기준 마련의 필요성)를 경제형법의 고유한 문제와 구별하고자 하는 Rotsch 교수의 견해는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특히 준법지원인의 보증의무 내지 부작위 가벌성의 문제는 형법적 컴플라이언스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본래 경제형법, 특히 형법총칙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영역에 투영된 모습으로 준법지원인의 형사책임을 계속해서 다룰 경우에 형법적 보증의무에 대한 의문의 제기는 전체적으로 경제형법의 문제가 된다.<sup>16)</sup>

한편 국내외의 여러 문헌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불충분함을 알 수 있다.<sup>17)</sup>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독일에서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인 컴플라이언스와 구별되는 특별한 분야로서,<sup>18)</sup> 특히 준법지원인의 보증의무와 관련한 독일연방법원의 베를린시

14) Rotsch, 위의 논문, S. 616.

15) Rotsch, 위의 논문, S. 616.

16) Rotsch, 위의 논문, S. 614.

17) 독일의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Bock, 앞의 책, S. 19-22 참조.

18) Bock, 앞의 논문, S. 21 ff.; Rotsch, 앞의 논문, S. 614; Ulrich Sieber, "Compliance- Programme im Unternehmensstrafrecht. Ein neues Konzept zur Kontrolle von Wirtschaftskriminalität", in: Sieber/Dannecker/

청소회사 판결(Berliner Stadtreinigung-Fall)<sup>19)</sup>에 대한 평석<sup>20)</sup>을 중심으로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Rotsch 교수는 컴플라이언스와 형법의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형법 도그마틱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발견되지 않음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sup>21)</sup> 이들 문헌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은 여전히 “컴플라이언스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이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종래의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적 컴플라이언스가 지향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이 준법지원인과 어떠한 연결 고리가 있는지는 주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적 컴플라이언스가 지향하는 핵심적 목적은 범죄행위의 방지에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왜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이 형사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도록 시도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형법적 책임귀속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sup>22)</sup>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일연방법원은 피혁스프레이 판결<sup>23)</sup>을 통해 회사법상 책임을 형사책임과 동일시하고 이에 따라 실제 행위를 한 하급 종업원뿐만 아니라 관련 임원에 대한 직접적 책임귀속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이미 기업 내부에서 임직원을 형사책임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더 대두되고 있다.<sup>24)</sup>

Kindhäuser/Vogel/Walter(Hrsg.), *Festschrift für Tiedemann*, Heymanns Verlag, 2008, S. 449.

19) BGH-Urteil. v. 17.07.2009 - 5 StR 394/08, in: *NJW* 43/2009, S. 3173-3176. 이 판결을 소개한 국내문헌으로는 이진국, “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 사법 제24호, 사법발전재단, 2013.6, 6쪽 이하 참조.

20) 대표적으로 Matthias Dann/Anja Mengel, “Tanz auf einem Pulverfass – oder: Wie gefährlich leben Compliance-Beauftragte?”, *NJW* 2010, S. 3265 ff.; Gerhard Dannecker/Christoph Dannecker, “Die Verteilung der strafrechtlichen Geschäftsherrenhaftung im Unternehmen”, *JZ* 20/2010, S. 981 ff.; Andreas Ransiek, “Zur strafrechtlichen Verantwortung des Compliance Officers”, *AG* 5/2010, S. 147 ff.; Thomas Rönau, “Der Compliance-Beauftragte als strafrechtlicher Garant”, *ZIP* 2/2010, S. 53 ff.; Nikolai Warneke, “Die Garnatenstellung von Compliance-Beauftragten”, *NSiZ* 2010, S. 312 ff. 참조.

21) Rotsch, 앞의 논문, S. 614.

22) 이에 대해 자세히는 Thomas Rotsch, *Individuelle Haftung in Großunternehmen: Pläoyer für den Rückzug des Umweltstrafrechts*, 1. Aufl., Nomos Verlag, 1998, S. 152 ff., 161-163.

23) BGHSt 37, 106. 이 판결을 소개한 국내문헌으로는 김동혁, “환경범죄에 있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점 -독일 피혁스프레이 사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4, 243-244쪽.

24) Rotsch, 앞의 논문, S. 616.

### 3.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와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형사책임 귀속

마지막으로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실질적 문제, 즉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잠재적으로나마 형사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형법적 컴플라이언스 내에서 가장 커다란 실질적 문제는 다름 아닌 목적 설정 그 자체에 있다. 범죄행위의 방지라는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목적 설정은 예방적 개념이기 때문에 손해의 발생에 앞서 예방적 차원의 조언 내지 상담과 과실에 대한 사전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사전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sup>25)</sup> 이러한 사전적 관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Rotsch 교수는 독일연방법원이 베를린시 청소회사 사건에서 사후적 관점을 통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고려하여 손해발생의 회피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위 사건의 법무과 과장임과 동시에 내부감사 부서의 과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 타당함을 적절히 지적하였다.<sup>26)</sup> 나아가 형법적 컴플라이언스 개념과 관련하여 Rotsch 교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최선을 다하여 실행한 컴플라이언스 상담과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의 방지에 실패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독일연방법원은 최종적으로 또 다시 사후적 관점을 적용하여 이러한 실패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sup>27)</sup> 이러한 Rotsch 교수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본다. 인식 내지 예견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잠재가능성과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은 하나의 커다란 어려움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오히려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이러한 의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적 준법지원인에 대한 의미 있는 형사책임의 한계 설정이 형법적 차원,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증의무<sup>28)</sup>를 인정할 수 있는 구성요건과 책임귀속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형사책임에서 형법적 보증의무의 제한은 금지착오의 형태로 가능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사업활동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형사책임

25) Rotsch, 위의 논문, S. 616.

26) Bock, 앞의 논문, S. 445; Rotsch, 위의 논문, S. 616.

27) Rotsch, 위의 논문, S. 616.

28) 독일에서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의무의 발생근거는 질서위반법 제130조 및 제30조, 주식법(AktG) 제91조 및 제93조 그리고 유한회사법(GmbHG) 제43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제542조의 13, 동법시행령 제40조에서 보증의무의 발생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의무의 발생근거가 상이하므로 그 구체적인 보증의무의 범위와 내용에서도 차이가 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기업 내부의 사내변호사 내지 외부 법률자문가의 신뢰할 만한 법률 자문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자문이 종국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법적 비난이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이는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sup>29)</sup> 그리고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후적 관점에서 의무가 부여된 행위를 했어야 했지만 구체적인 규범요구를 알지 못하여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업에 대한 범죄행위의 위협의 예견가능성이 결여되거나 과실 영역에서 기업 내부규정의 부재를 이유로 비난가능성이 결여되어 면책될 수 있다.<sup>30)</sup>

### III.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주요 역할

#### 1. 준법지원인의 일반적 역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① 임직원의 법령위반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 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② 기업의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③ 고객에 대한 적정한 자문 등을 함으로써 임직원의 질적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sup>31)</sup> 이러한 목표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제도적·조직적 차원에서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준법지원인이 언제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 내에서 법령준수 및 윤리적인 사업경영, 내부 및 외부 규정과 원칙의 준수, 무엇보다도 기업범죄의 방지 및 기업윤리의 준수 등이라는 컴플라이언스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준법지원인은 포괄적인 위험평가, 기업 내 자체 컴플라이언스 기준의 확립, 전문적인 조언과 상담, 명확한 책임규정의 확립, 법령준수와 관련된 원활한 의사소통 및 교육, 모니터링체계·감사체계·자체평가체계 및 보고체계(내부고발제도, 핫라인 등)의 수립, 일관된 훈련과 적정한 인센티브의 마련 등<sup>32)</sup>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준법지원인의 일반적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개정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천억

29) Rotsch, 앞의 논문, S. 617.

30) Rotsch, 위의 논문, S. 616, 617.

31) 이진국, 앞의 논문, 2013, 10쪽.

32) Hauschka, 앞의 책, S. 632.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하는데(같은 법 제542조의13 제1항), 준법지원인의 핵심 역할은 이러한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상법상 준법감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준법통제체제의 운영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하거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조사하기도 하고, 임직원의 법령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준법통제체제를 운영·점검한 결과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준법지원인은 법령준수 측면의 사전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정관·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주요 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신상품개발 등 신규업무의 개발 및 추진,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중요 서류, 이사회나 각종 위원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준법지원인이 제반 법령의 위반여부를 사전 검토한다.<sup>33)</sup> 그렇다면 이러한 준법지원인의 일반적 역할 가운데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특별한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특별한 역할

### 2.1 기업 내부에서 임직원에 의한 기업에 대한 범죄행위의 방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에 의한 범죄행위를 방지할 의무는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며, 이를 위해 형법적 준법지원인이라는 기본사고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주요한 목적이 기업의 법익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법원은 준법지원인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였다.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은 법령위반, 특히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막대해 손실 혹은 기업평판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sup>34)</sup>

33) 박선중, 앞의 논문, 241-243쪽; 박한성, 앞의 논문, 137-138쪽; 이진국, 앞의 논문, 69-71쪽; 주기중, 앞의 논문, 413-415쪽.

34) BGH-Urteil. v. 17.07.2009 - 5 StR 394/08, in: NJW 43/2009, S. 3174.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기능을 고려할 경우 기업의 법익보호 기능이 그 중심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컴플라이언스는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민형사상 제재를 포함하여 각종 행정제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데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기능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에 의한 범죄행위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고유한 목적이며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핵심적 역할이기도 하다.<sup>35)</sup>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법익보호를 조직적 차원에서 달성하기 위해 선임된다. 이 때문에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선임은 많은 기업, 특히 대기업에서 관찰되는 ‘조직화된 무책임(organisierte Unverantwortlichkeit)’<sup>36)</sup>과 정반대되는 일이다. 통화 연결음 시스템,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회사 그리고 고객이 인식할 수 없는 통화 상대방과 회사조직은 그러한 조직화된 무책임을 대표한다.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선임은 의식적으로 형법적 준법지원인이란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책임자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조직화된 무책임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기능적으로 법령준수 관리만을 담당하는 단순한 ‘감독보증인(Überwachungsgarant)’이 아니라 기업의 법익보호에 대해 부작위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무엇보다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에 의한 범죄행위를 방지해야만 한다.<sup>37)</sup>

기업 내에서는 임직원, 즉 기업 내 모든 계층조직의 직원, 이사 및 감사가 사업 활동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전임직원이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할 것을 책임진다.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법령위반 방지 의무는 바로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도출된다. 다만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자동적으로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보다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법질서에 의하여 특별히 타인에 대한 감시 의무를 부과 받고 그 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그 타인의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 행위에 대해 보증인지위 및 보증의무를 진다.<sup>38)</sup>

35) Thomas Lösler, “Spannungen zwischen der Effizienz der internen Compliance und möglichen Reporting - Pflichten des Compliance Officers”, *WM* 2007, S. 677.

36)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김재운, 앞의 책, 209-210쪽 참조.

37) Sylvia Langenhahn,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s Compliance Officers im deutsch-österreichischen Rechtsvergleich*, Salzburg, 2012, S. 61.

38) 손동권/김재운, 새로운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408쪽.

이와 관련하여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범죄행위 방지의무의 범위를 고려할 경우 그가 사실상 기업의 임직원 전부의 행위를 하나하나까지 물샐틈없이 감독해야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내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의 직원의 의무와 비교하는 것이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 독일의 다수견해에 따르면 기업 내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의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증인지위가 인정된다고 한다.<sup>39)</sup> 이러한 보증인지위는 이사회 활동에 대한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의 개별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케 하는 감독가능성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러나 이사 내지 이사회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사 내지 이사회 차원에서 법령위반 행위를 할 경우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는 본질적으로 사후적 감독의 성격으로 인해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독이 “거부”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40)</sup>

그러나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이사 내지 이사회에 대한 감독·통제를 담당하는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와 달리 기본적으로 기업 내에서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법령위반의 방지와 제반 규범을 준수하는 행동의 보증은 형법적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내지 그에 따라 형법적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려는 본래의 목적이다. 따라서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이어나 그 밖의 하급 직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임직원의 법령준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형법적 준법지원인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역할 정의로부터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적 준법지원인보다 상위 내지 동등한 직급인 고위경영진의 법령준수 행동과 관련하여 감독의무와 이에 따른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는 이미 인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내지 대표이사로부터 권한 위임을 통해 일정한 역할 목록을 부여받는데, 이에 따라 자기 자신보다 상급자인 최고경영자 내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고위경영진의 법령위반에 따른 보증의무, 즉 ‘결과발생방지의무(Erfolgsabwendungspflicht)’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급 직원의 법령준수 행동과 관련해서도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보증인지위가 언제나 인정될

39) 대표적으로 Ralph Schilha, *Die Aufsichtsratsstätigkeit in der Aktiengesellschaft im Spiegel strafrechtlicher Verantwortung*, Berlin, 2008, S. 181; Daniel M. Krause, “Strafrechtliche Haftung des Aufsichtsrats”, *NSiZ* 2011, S. 60 ff. 참조.

40) Krause, 앞의 논문, S. 60.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제3자인 하급 직원의 법령위반 행동을 얼마만큼 방지할 수 있을지는 감독의무의 성공적인 위임으로부터 발생하는 “하급 직원에 대한 지배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전폭적인 지시권한과 위임권한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들이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기본적 기능으로부터 저절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 목록의 정의는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보증인지위의 문제와 엄격하게 구분될 수 있다.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역할이 기업에 속한 모든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형법적 준법지원인으로 하여금 보호 내지 감독보증인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의 분명한 귀속과 보증의무의 제한을 위해서라도 모든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선임계약서에는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부담하는 감독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원칙적으로 모든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감독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가 생각 가능한 모든 법령위반을 방지해야만 하는지도 의문이다.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주차위반에서부터 회사자산의 횡령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지어 기업 내 각종 부정부패를 방지를 위해 포괄적 보호의무의 인수와 그에 따른 개인적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괄적 보호의무의 인수와 그에 따른 개인적 형사책임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 관점에서든 어느 누구라도 언제든지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불합리하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sup>41)</sup> 누구도 범죄행위의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퇴치를 약속하거나 보증할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약속이나 보증을 요구하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는 이행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의칙에 반하는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러한 초월적 감독권한을 가진 사람을 가정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의 본래적 개념과도 상충된다.<sup>42)</sup>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결과발생방지의무를 제한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사실적이고 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에 의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할 수 없음을 당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업무분야 혹은 중요한 업무분야로 국한하여 결과발생방지의무

41) Regina Michalke, “Neue Garantenpflichten? – oder: Haftung des Compliance Officers”, *AmwBl* 2010, S. 669.

42) Langenhahn, 앞의 책, S. 62-63.

의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부여되는 범죄행위의 방지의무는 기업의 다양한 업무수행과 별개로 업무상횡령죄 내지 업무상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 주가조작 등의 자본시장범죄, 유가증권위변조죄와 같은 유가증권범죄, 영업비밀침해 등의 산업스파이범죄 등 분야를 특정하여 부여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이러한 특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보증의무의 범위는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선임계약 체결 시에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에 의한 범죄행위를 방지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는 잠재적 범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업 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나, 재산범죄, 자본시장범죄 등 특정한 구성요건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로부터 보증인지위 및 보증의무가 언제나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선임계약 체결 시에 그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보증의무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법익보호의 관점을 고려할 경우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법익보호”에 책임을 진다. 독일연방법원은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일반적 보증의무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무로부터 도출하였다.<sup>43)</sup>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일반적 보증의무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기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책임을 지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감사(내지 감사위원회)와 뚜렷이 구별된다. 즉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나 이사회에 의해 초래되는 손해에 대해 기업재산을 보호할 보증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사의 보증의무는 감사는 다른 아닌 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존재하고, 무엇보다 기업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사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의 보증의무가 동일한 내용으로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감사와 달리 본래 기업재산을 보호하는 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그리고 인적 이익을 감독하기 위해 선임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은 예컨대 새로운 법령, 부정부패, 뇌물 수수 등에 의해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 노출된 범죄행위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역할 범위에서 기업재산의 보호는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간접적인 역할에 속한다. 다만 그러한 범위 내에서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예컨대 횡령·배임행위, 자금세탁행위,

43) BGH-Urteil. v. 17.07.2009 - 5 StR 394/08, in: NJW 43/2009, S. 3173.

내부자거래 등을 방지해야 한다. 기업재산의 유지와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전한 사업 운영의 안전조치는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이 아니라 감사의 역할에 속한다.

그러므로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앞서 언급한 특정 업무분야 혹은 중요한 업무분야에 국한하여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에 의한 범죄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진다. 이 때문에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범죄행위를 방지할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위반을 방지할 의무는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의무에 속한다. 범죄행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의무는 형법적 준법지원인으로 하여금 모든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준다. 이에 따라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의 작위 내지 부작위에 의해 기업의 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언제 발생할 것인지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미 발생했다면 이를 적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향후 유사한 범죄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sup>44)</sup>

## 2.2 기업 외부에서 제3자에 의한 기업에 대한 범죄행위의 방지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기업 외부에서 제3자에 의해 기업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이 처음부터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 범위에서 제외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간접적으로나마 기업의 법익을 보호하는 데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법익은 기업 내부에서 임직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에서 제3자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 범죄행위의 방지의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는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업 내부 혹은 외부에서 야기될 수 있는 생각 가능한 모든 범죄행위의 위험을 예방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로 한정하여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예방적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기업 외부에서 제3자에 의한 기업의 법익침해의 위험과 관련하여 예컨대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죄의 구성요건을 생각할 수 있다.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배임수증재죄에 있어 배임수재 혹은 배임증재 어느 한 행위의 방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기업의 임직원 입장에서 볼 때 배임수증재죄의 행위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은 기업 외부에서 제3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행위가 전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임직원이 배임

44) Langenhahn, 앞의 책, S. 64-66.

수증재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방지의무와 개입의무를 부담한다. 이 때문에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기업 자체 내지 기업 임직원에게 제3자의 범죄행위(예컨대 배임증재 행위 등)를 방지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가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자는 무엇보다 기업에서 체결하는 여러 형태의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컨대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계약체결 과정에서 그러한 계약이 자신의 기업에게 손실을 야기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계약상 대방의 정직성을 조사하고 검토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은 개념상 ‘범죄행위에 대한 기업실사(Crime Due Diligence)’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기업에서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재정운영 과정에 범죄적 속입수가 숨어 있는지, 계약당사자의 사기적 행위는 없는지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실사는 기업 내부의 법무부서에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범죄행위에 대한 기업실사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법무부서가 아닌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이러한 역할을 특별히 맡기고 그로 하여금 제3자의 범죄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법적 준법지원인에 대한 이러한 방지의무는 이와 관련된 기능을 인수함으로써 당연히 인정되는 아니라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선임계약 체결시 이러한 의무의 인수를 통해 인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업실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있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필수요소는 아니고 개별 사안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기업실사는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의무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기업 외부에서 제3자에 의한 법익침해의 위험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이에 대한 방지의무는 기대가능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실현 가능하고 요구되는 결과발생방지의무로 제한되어야 한다.<sup>45)</sup>

### 2.3 기업 내부에서 제3자(예컨대 고객)에 대한 범죄행위의 방지

독일연방법원은 2009년 7월 17일 판결에서 제3자(예컨대 고객)보호와 관련하여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sup>46)</sup> 즉 독일연방법원은 판결이유에서 민간 기업 내 법무부서와 내부감사 부서의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

45) Langenhahn, 앞의 책, S. 66-67.

46) BGH-Urteil. v. 17.07.2009 - 5 StR 394/08, in: NJW 43/2009, S. 3173.

행위를 방지할 어떠한 보증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이유는 부작위가 제3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관련된 경우 그리고 해당 당사자가 이러한 제3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단지 계약체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상 인수했을 경우에 공법상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sup>47)</sup> 반면에 독일연방법원은 (형법적) 준법지원인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제3자에 대한 범죄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컴플라이언스라는 일반적인 기능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sup>48)</sup> 이에 따라 독일 판례에 따르면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제3자 보호의무는 긍정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연방법원은 유감스럽게도 (형법적) 준법지원인과 관련하여 그에게 이러한 일반적 제3자 보호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 추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제3자에 대한 보증의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인지, 컴플라이언스가 갖는 기능이 제3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기업 외부에서 존재하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기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아닌 기업 자체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구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 대중, 계약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들은 어쨌든 기업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sup>49)</sup> 때문에 이 견해는 독일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견해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컴플라이언스는 본래 기업의 내부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외부의 제3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3자 보호와 관련된 형법상 중요한 부작위 책임을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어쨌든 그와 같은 제3자 보호라는 목적 설정은 현행 법률에서 아직까지 규정된 바 없다. 이 때문에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제3자 보호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컨대 자본시장법의 영역에서 컴플라이언스는 자본시장 내지 자본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47) BGH-Urteil. v. 17.07.2009 - 5 StR 394/08, in: *NJW* 43/2009, S. 3173; Michalke, 앞의 논문, S. 667.

48) Michalke, 위의 논문, S. 667.

49) Dirk M. Barton, "Der Compliance Officer im Minenfeld des Strafrechts – Folgewirkungen des Urteils des BGH vom 17.07.2009 auch für den Datenschutzbeauftragten?", *RDV* 2010, S. 24.

따라 투자자 내지 자본시장 보호가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재투영될 수 있음은 제한된 영역에서나마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sup>50)</sup>

그리고 예컨대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상장회사 내부에서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을 방지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러한 방지의무는 직접적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고 명성과 평판의 보호 형태로 간접적으로나마 기업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일반적인 제3자 보호의무를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의무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컴플라이언스는 자본시장의 영역에서도 모든 법령의 이행과 준수를 의미하지 제3자의 손해방지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sup>51)</sup>

이러한 제3자의 법익에 대한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의무의 부인은 다시 감사의 보증의무의 범위와 병렬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 있다. 감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임되고 회사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로부터 감사의 보증의무는 제3자나 제3자의 법익이 아닌 오로지 회사의 재산상 이익과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sup>52)</sup> 다만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때때로 감사로서 폭넓은 보호방침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와 같이 제3자와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업실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행동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이러한 활동은 제3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기업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 범위에 제3자의 법익보호가 포함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이에 따르면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공공의 일반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어떠한 보증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sup>53)</sup>

## 2.4 복합기업에서 외국 자회사에 대한 범죄행위의 방지

외국 자회사를 소유한 복합기업(Konzern)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허용되고 있으며 그 정점에 최고준법지원인(Chief Compliance Officer: CCO)이 있다. 또한 다수의 책임자가 개별 자회사에서 법령에 합치되는 행동을 하도록 보증하고 기업에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수

50) Thomas Lösler, "Zur Rolle und Stellung des Compliance-Beauftragten", *WM* 2008, S. 1102.

51) Kapfer/Resch, in: Gruber/Raschauer(Hrsg.), *Kommentar zum WAG Band I und II*, LexisNexis, 2010, § 18 Rn. 2.

52) Krause, 앞의 논문, S. 61.

53) Langenhahn, 앞의 책, S. 67-69.

의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범죄행위의 방지의무와 관련하여 권한의 위임과 감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고준법지원인은 외국 자회사에서도 기업에 손실을 야기하는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합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sup>54)</sup> 이러한 이유에서 복합기업에서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범죄행위의 방지의무가 일반 형태의 기업보다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복합기업에서 최고준법지원인 내지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부담하는 범죄행위의 방지의무의 구체적 범위는 그 선임계약의 체결 시에 분명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확대된 범죄행위의 방지의무는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여 결코 자동적으로 인수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최고준법지원은 권한의 위임, 선임 및 감독의 결여를 이유로 책임비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최고준법지원은 범죄행위의 방지의무와 관련하여 그 권한이 하위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완전히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최고준법지원은 하위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선임감독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기업에 속한 외국의 한 자회사에서 활동하는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개별적 부작위는 복합기업 내부의 최고준법지원인에게 그 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

요컨대 복합기업에서 외국 자회사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최고준법지원인 내지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범죄행위의 방지의무가 원칙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언제나 범죄행위의 방지의무가 자동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다. 복합기업에서 최고준법지원인 내지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유리한 책임제한과 책임면제의 문제는 이들의 선임계약 체결 시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sup>55)</sup>

54) 최고준법지원인은 임원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자신의 조직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유지할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고준법지원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최고준법지원인의 적절할 역할, 힘, 그리고 권한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최고준법지원인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이도록 하는데 필요한 힘, 지위,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② 최고준법지원인이 조직의 자원, 서류 및 직원에 대해 필요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③ 최고경영자 또는 고위경영진의 일원이 심각한 비리 혐의의 대상자여서 이들이 보고 석상에 참석하지 않아야 할 경우 최고준법지원인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이사회 또는 그 하위 위원회의 위원이 있는가, ④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에서 최고준법지원인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다뤄야 할 몇 가지 핵심 이슈들에 속한다고 한다(마틴 비겔만, 노동래 율김, 윤리 준법 경영의 성공 전략 컴플라이언스, 연암사, 2013, 284쪽; 마이클 실버만, 노동래 율김, 공공, 민간, 비영리 조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연암사, 2013, 183-185쪽).

55) Langenhahn, 앞의 책, S. 71-72.

#### IV. 맺는 말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일의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접하는 법규범, 회사규범, 기업윤리 등 제반 규범상 명시된 요구나 금지를 준수하도록 사전에 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의 개념은 형법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형법적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는 기업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 특별형법 및 부수형법을 포함하는 광의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범적 내용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56)</sup> 이러한 이해로부터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개념이 도출될 수 있는데,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는 일반적 컴플라이언스의 특수한 부분으로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에 의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적인 기능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의 방지에 있다. 즉 기업은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임직원이 형법상 범죄행위나 행정법상의 위반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업은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임직원이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기업 그 자체에 대하여 범하게 되는 범죄(예컨대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뿐만 아니라 제3자(예컨대 당해 기업의 거래당사자 또는 고객)에게 범하게 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기업이 형법적 컴플라이언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 고객, 일반 투자자, 나아가 전체 국민 경제 등 여러 이해 관계자에게 다양한 유·무형의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로인해 한편으로 손해배상 또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기업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고,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서의 기업 지위의 하락, 고객의 상실 또는 기업서열의 하락 등의 형태로 기업의 사회적 명성이나 평판과 관련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sup>57)</sup>

이처럼 범죄행위의 방지라는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형법적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시스템의 견고한 구축

56) 김성규, “준법관리 프로그램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형사정책 제2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181-182쪽.

57) 이진국, 앞의 논문, 2013, 11쪽.

이 요구된다. 이 때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무엇보다 기업 내부에서 임직원에 의한 기업에 대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업 외부에서 제3자에 의한 기업의 법익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복합기업의 경우 외국 자회사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부담하는 이러한 범죄행위의 방지의무로부터 이들에게 언제나 자동적으로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의 선임계약 체결 시에 구체적인 보증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에 제3자(예컨대 고객)의 법익보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제3자의 법익(또는 공공의 일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내부나 외부로부터 범죄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재운,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 마틴 비젤만, 노동래 옮김, 윤리 준법 경영의 성공 전략 컴플라이언스, 연암사, 2013.
- 마이클 실버만, 노동래 옮김, 공공, 민간, 비영리 조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연암사, 2013.
- 손동권/김재운, 새로운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 Christoph E. Hauschka(Hrsg.), *Corporate Compliance*, 2. Aufl., C.H. Beck Verlag, 2010.
- Dennis Bock, *Criminal Compliance*, 1. Aufl., Nomos Verlag, 2011.
- Kapfer/Resch, in: Gruber/Raschauer(Hrsg.), *Kommentar zum WAG Band I und II*, LexisNexis, 2010.
- Ralph Schilha, *Die Aufsichtsratsstätigkeit in der Aktiengesellschaft im Spiegel strafrechtlicher Verantwortung*, Berlin, 2008.
- Sylvia Langenhahn,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s Compliance Officers im deutsch-österreichischen Rechtsvergleich*, Salzburg, 2012.
- Thomas Rotsch, *Individuelle Haftung in Großunternehmen: Pläoyer für den Rückzug des Umweltstrafrechts*, 1. Aufl., Nomos Verlag, 1998.

### 2. 학술지

- 김동혁, “환경범죄에 있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점 -독일 피렉스프레이 사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4, 241-270쪽.
- 김성규, “준법관리 프로그램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형사정책 제2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179-202쪽.
- 박선중, “개정상법상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한국법학원, 2011.6, 233-261쪽.
- 박한성,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방안”, 외법논집 제38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

- 교 법학연구소, 2014.11, 131-148쪽
- 윤성승,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의 문제점”,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12, 155-178쪽
-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65-89쪽.
- \_\_\_\_\_, “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 사법 제24호, 사법발전재단, 2013.6, 1-41쪽
- 정찬형,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방향 - 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5호, 법무부, 2011.7, 11-37쪽
- 주기종,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와 해결”, 법학연구 제48권, 한국법학회, 2012, 405-425쪽
- Andreas Ransiek, “Zur strafrechtlichen Verantwortung des Compliance Officers”, *AG* 5/2010, S. 147-153.
- Daniel M. Krause, “Strafrechtliche Haftung des Aufsichtsrats”, *NSiZ* 2011, S. 57-65.
- Dennis Bock, “Strafrechtliche Aspekte der Compliance-Diskussion - §130 OWiG als zentrale Norm der Criminal Compliance”, *ZIS* 2/2009, S. 68-81.
- \_\_\_\_\_, “Strafrechtlich gebotene Unternehmensaufsicht (Criminal Compliance) als Absenkung des Schadenserwartungswerts aus unternehmensbezogenen Straftaten”, *HRRS* 2010, S. 316-329.
- Dirk M. Barton, “Der Compliance Officer im Minenfeld des Strafrechts – Folgewirkungen des Urteils des BGH vom 17.07.2009 auch für den Datenschutzbeauftragten?”, *RDV* 2010, S. 19-27.
- Gerhard Dannecker/Christoph Dannecker, “Die Verteilung der strafrechtlichen Geschäftsherrenhaftung im Unternehmen”, *JZ* 20/2010, S. 981-992.
- Hans Theile, “Unternehmensrichtlinie - Ein Beitrag zur Prävention von Wirtschaftskriminalität?”, *ZIS* 9/2008, S. 406-418.
- Malte Passarge, “Risiken und Chancen mangelhafter Compliance in der Unternehmensinsolvenz”, *NZI* 2009, S. 86-91.
- Matthias Dann/Anja Mengel, “Tanz auf einem Pulverfass – oder: Wie gefährlich leben Compliance-Beauftragte?”, *NJW* 2010, S. 3265-3269.

- Michael Streck/Burkhard Binnewies, "Tax Compliance", *DSiR* 2009, S. 229-234.
- Nikolai Warneke, "Die Garnatenstellung von Compliance- Beauftragten", *NSiZ* 2010, S. 312-317.
- Regina Michalke, "Neue Garantenpflichten? – oder: Haftung des Compliance Officers", *ArwBl* 2010, S. 666-670.
- Thomas Lösler, "Spannungen zwischen der Effizienz der internen Compliance und mölichen Reporting - Pflichten des Compliance Officers", *WM* 2007, S. 676-683.
- \_\_\_\_\_, "Zur Rolle und Stellung des Compliance- Beauftragten", *WM* 2008, S. 1098-1104.
- Thomas Rönnau, "Der Compliance- Beauftragte als strafrechtlicher Garant", *ZIP* 2/2010, S. 53-54.
- Thomas Rotsch, "Criminal Compliance", *ZIS* 2010, S. 614-617.
- Ulrich Sieber, "Compliance- Programme im Unternehmensstrafrecht. Ein neues Konzept zur Kontrolle von Wirtschaftskriminalität", in: Sieber/Dannecker/Kindhäuser/Vogel/Walter(Hrsg.), *Festschrift für Tiedemann*, Heymanns Verlag, 2008, S. 449-484.

### 3. 기타자료

- BGH-Urteil. v. 17.07.2009 - 5 StR 394/08, in: *NJW* 43/2009, S. 3173-3176.

[ Abstract ]

## Consideration on Concept and Role of Criminal Compliance Officer

Kim, Jae-Yoon\*

Normally ‘Compliance’ can be defined as “System for regularly supervising and regulating enterprises and its employee in advance to comply with demands and prohibitions specified in various norms such as laws, company rules, business ethics”. This concept of compliance has its character as a legal action for preventing corporate crimes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It is because compliance in the aspects of criminal law can be understood as an action for securing compliance of normative contents defined in a broad range of crimes including special and appendant criminal laws. The concept of criminal compliance can be drawn from this understanding. Criminal compliance is a special part of normal compliance, which is a whole system of actions necessary to prevent corporate crimes by employees.

Above all, the key function of criminal compliance is preventing crimes that can happen in companies. That is, the companies should take appropriate action to prevent its employees from committing a penal crime or breaking administrative laws. If the company does not take such action, its damage primarily goes to that company. Moreover, accounts, customers, investors, and furthermore, the whole national economy can be damaged too. From this, on the one hand, the company will experience property loss due to compensation or imposed fine, penalties, and on the other hand, the damage related to the company’s social reputation will occur, such as dropped market position of the company, and its customer loss.

To make the key function of criminal compliance, which is preventing criminal act, function proper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solid system and organization of compliance around criminal compliance officer. This criminal compliance officer prevents employees from committing crime toward the company, third party from infringing the company’s benefit

---

\* Professor, Law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of law from the exterior under limited bound, foreign subsidiaries from entrenching benefits of law, if it is the case of conglomerate. However, such duty of crime prevention which criminal compliance officer imposes does not always automatically cause the status or obligation as a guarantee, and specific range of duty of guarantee should be specified while making a contract for designating officers.

Also, one thing to be careful is that protection of benefits of law(such as customers') is not included in the role of criminal compliance officer. It is because criminal compliance officer is not for protecting benefits of law of third party(or general interests of public), but instead for preventing the loss of company that may occur from crimes from interior or exterior of the company.

**[Key Words]** Compliance, Compliance Officer, Criminal Compliance Officer, Chief Compliance Officer, Corporate Crimes, Crime Due Diligence